투자계약서

투자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집합투자업자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2021년 9월 30일

제1장 종칙1
제1조 (계약의 목적)
제4조 (투자신탁의설정)5 제2장 수익증권의 매입5
제5조 (신탁원본의 매입)5 제6조 (추가 매입)
제8조 (매입시기)
제11조(기존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 중액)9 제12조(수익증권 매입권 등)10
제13조 (매입의무의 위반)
제14조(수익증권의 처분)11 제4장 수익자총회 및 투자자협의회12
제15조(수익자총회)
제16조(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제19조(회계)
제22조(투자신탁의 존속기간)
제24조(진술 및 보증)

	29조(계약의 변경) 30조(분쟁해결)	
	31조(그 밖의 조항)	
별지 1	매입약정금액 및 매입약정비율	
별지 2	매입약정인수약정서(양식)	
별지 3	매입약정금액 증액약정서(양식)	
별지 4	양수확약서(양식)	
별지 5	운용전담인력	
별지 6	투자대상법인	

이 투자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신탁인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호"(이하 "이 투자신탁" 또는 문맥에 따라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30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1. 투자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종로1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이하 "투자자"라 한다)

2.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 (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 (1) 이 계약은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붕형 또는 ESS 연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Ground Type 태양광발전사업(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영위할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하 "투자대상법인"이라 하며, 별지 6 기재 투자대상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당사자들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수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고, 투자자를 동법 제24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로 운영하고자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계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 문맥상 명백히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신탁계약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1. "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정도로 경영 전반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 당사자에 의하여 통제·지시 받거나 또는 각 당사자를 통제·지시하는 자, 또는 각 당사자와 함께 동일한 자로부터 경영상의 통제·지시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통제·지시"라 함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운영 및 정책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기준가격"이라 함은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 3. "납입기일"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각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입대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하는 날로서 제8조에서 정한 날을 의미한다.
- 4. "납입불이행당사자"라 함은 제10조 제1항에서 정의되는 바에 따른다.
- 5. "당사자"라 함은 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 계약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 6. "매입"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각 투자자가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매입약정금액"이라 함은 각 투자자가 이 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미 매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되, 동 금액은 수

- 익증권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일 현재 각 투자자의 매입약정 금액은 별지1의 '매입약정금액' 항목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 8. "매입약정기간"이라 함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당시에 매입한 것 이외에 제6조에 따라 추가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으로서 제7조에서 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 9. "메입약정비율"이라 함은 메입약정총액에 대한 각 투자자의 메입약정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계약 체결일 현재 각 투자자의 메입약정비율은 별지1의 '메입약정비율' 항목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 10. "매입약정인수인"이라 함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의 수익증권을 매입 및 인수하게 된 자를 의미한다.
- 11. "매입약정총액"이라 함은 투자자들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매입약정금액(이 미 매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12. "매입지분비율"이라 함은 동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이 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실제 납입한 납입금 누적액(이 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한 어느 한 투자자의 납입금 누적액(이 계약에 따라 어느 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 그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그 다른 투자자가 납입한 납입금을 그 매수한 투자자의 납입금 누적액에 포함하여 산정함)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매입지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투자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경우, 그 배제된 투자자의 매입지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 간의 상대적매입지분비율을 의미한다.
- 13.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한다.
- 14. "신탁계약"이라 함은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계약을 말하며, 이 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수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 15. "신탁업자"라 함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그 적법한 승계인을 말한다.
- 16.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을 제외한다.

- 17. "자본시장법령"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밖에 이에 따라 제정되는 모든 관계법규를 의미하며, 이 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개정되는 것 및 이를 대체하는 내용으로 제정, 시행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18. "지분비율"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모든 투자자들이 이미 납입한 매입대금의 합계액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각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매입대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 19. "투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 투자대상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대출채권 등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 20. "투자자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투자 대상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대출채권 등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채권, 지연손 해금채권, 손해배상금채권 등 일체의 자산을 의미한다.
- 21. "투자대상"이라 핚은 신탁계약 제24조에서 정한 투자대상을 의미한다.
- 22. "판매회사"라 함은 현대차증권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 (신탁계약의 작성 및 이 계약과의 관계)

- (1)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그와 같이 체결된 신탁계약의 내용을 이 계약의 일부로 삼는다.
- (2)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 1. 이 계약의 수정, 법령의 개정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 또는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2. 투자자 전원이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 (3) 신탁계약의 조항이나 설립계획서의 내용 중 이 계약의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령 등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투자신탁의 설정)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령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다.

제2장 수익증권의 매입

제5조 (신탁원본의 매입)

- (1)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은 매입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투자신탁 이 최초 투자하는 투자금액으로 하고, 신탁원본액은 최초 설정 요청일로부터 일(1)영업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에게 고지 한다.
-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3) 각 투자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른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액 중 각 투자 자의 매입약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회사에 금전으로 납입하고, 이 투자 신탁의 최초 설정 시 발행된 수익증권을 매입약정비율에 따라 매입한다. 이 경우 각 투자자가 부담하는 매입의무는 매입약정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조 (추가 매입)

- (1)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입약정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8조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매입약정비율에 따른 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모든 투자자는 수익증권 추가발행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투자자가 부담하는 매입의무는 매입약정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 2. 이 투자신탁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보수,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 등의 지급의무 및 이 투자신탁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 (2)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느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입약정금액을 증액한 투자자(이하 "중액당사자"라 한다)에 대한투자신탁을 추가설정하고, 증액당사자는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으로 발행되는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투자자는 수익증권 추가 발행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3) 각 투자자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추가 매입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7조 (매입약정기간)

- (1) 매입약정기간은 투자신탁이 설정된 날로부터 이(2)년이 되는 날 또는 매입약정 총액의 전액이 매입 완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2) 매입약정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매입약정금액 전액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자들의 수익증권 매입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투자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약정기간 이후에도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한도 내에서 각 호의 해당 금액에 대한 수익증권 매입의무를 부담한다.
 - 매입약정기간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
 - 2. 투자신탁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보수,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 등 운전자금 및 투자신탁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상당한 금액

제8조 (매입시기)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입기일로부터 이(2)영업일 전까지(다만, 최초 납입기일의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한다) 판매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각 투자자는 정해진 납입기일에 당해 매입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고 추가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 가격은 신탁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매입비율)

- (1) 각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및 추가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시, 해당 수익 증권 매입 후의 각 투자자의 누적 지분비율이 매입약정비율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익증권을 매입한다. 단,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액당사자가 수익증권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매입약정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권리·의무관계는 변경된 매입약정비율에 따른다.
- (2)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정해진 매입대금 납입기일까지 매입약정비율에 따른 매입에 필요한 내부수권 절차 및 관계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매입의무의 불이행)

(1)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납입불이행당사자")는 매입대금 납입기일로부터 삼(3)일째 되는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이하 "추후 납입일"이라 한다)까지 ① 미납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② 납입기일로부터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날까지 미납된 매입대금에 연 10%의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납입불이행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②의 금액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매입약정총액에서 납입불이행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 매입약정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지급하며, 이 경우 ②의 금액은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의 매입약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나머지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계약상 나머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써 납입불이행당사자에게 위 ①과 ②의 금액을 납입 및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투자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납입일까지 기다릴 경우 투자

일정에 따른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 계약상 나머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써 추후납입일 전이라도 제2항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2)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미납한 매입대금을 추후납입일(집합투자업자가 추후 납입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입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나머지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 계약상 나머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써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당시 보유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함께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매입 및 인수하거나 또는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매입 및 인수하거나 또는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만을 인수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매입제안에 응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매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 또는 인수하는 비율은 매입제안에 응한 투자자들 간의합의로 정한다. 다만, 나머지 당사자들이 매입 또는 인수하는 기간은 납입불이행당사자의 추후납입일로부터 삼십(30)일째 되는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내로 한다.
 - 1. 납입불이행당사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 매입제안 당시의 기준가격에서 10% 할인한 가격
 -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 실제 매입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3)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매입대금 중 미납입된 금액이 여전히 있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그 수익증권을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당시 보유하는 수익증권과 함께, 투자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 및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조치의실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불이행당사자의 이 계약에 따른 매입약정금액에 대한 매입의무 및 투자자로서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권리및 기타 의무는 매입약정인수인에게 이전한다.

- 1. 납입불이행당사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 매입제안 당시의 기준가격에서 최대 10%까지 할인한 가격
- 2.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 실제 매입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4) 투자자들은 이 계약으로 집합투자업자에게 납입불이행당사자 및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① 제2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보유한 수익증권과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그 매입 및 매입제안에 응한 당사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② 제3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보유한 수익증권과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입약정인수인을 선정하고 해당 매입약정인수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해당 매입약정인수인으로 하여금 별지2 양식에 따른 매입약정인수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이 계약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각 부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러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집합투자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는 그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집합투자업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의 매입 및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는 해당매입대금 납입기일로부터 해당매입대금이 실제로 납입된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그 매입약정금액의비율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납입불이행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따른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매매,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의 매입과 이 계약상권리 및의무의 양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기존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 증액)

(1) 투자신탁 설정 후 기존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 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투자자 전원이 각 매입약정비율에 따라 매입약정금 액을 증액하는 방법
- 2.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어느 투자자가 자신의 매입약정금액을 증액하는 방법
- (2) 제1항에 따라 매입약정금액을 증액한 투자자는 그와 같이 증액된 매입약정금액 으로 이 계약 체결 시부터 매입약정을 한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제1항에 따라 매입약정금 액을 증액하는 투자자와 별지 3 양식으로 매입약정금액 증액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12조 (수익증권 매입권 등)

-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수익증 권 발행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 리가 있다.
- (2) 투자자는 자본시장법령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증 권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매입의무의 위반)

- (1) 어느 투자자가 본 장에서 정한 매입의무를 위반한 경우(납입불이행당사자가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추후납입일까지 미납된 매입대금을 전부 납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약벌로서 해당 미납된 매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미납된 매입대금에 상당한 수익증권을 실제 매입 또는 인수한 투자자들에게 그 매입 및 인수비율에 따라 각 지급하여야 한다.
- (2) 납입불이행당사자가 매입약정비율에 따른 매입을 불이행한 금액은 이 계약에 따라 매입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동의, 이의 없음 또

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제3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6조, 제27조 제2항 제3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그 매입약정총액 및 해당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에서 제외한다.

제3장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제14조 (수익증권의 처분)

- (1) 각 투자자는 매입약정기간 동안 그가 보유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그 밖에 수익자의 변 동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본 조에서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률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처분 등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을 제외한 투자자 전원이 해당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 (2) 제1항 단서에 따라 어느 투자자(본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가 투자신탁 수익 중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양도인의 이 계약상 매입 약정금액에 대한 잔여 매입의무 중 양도인이 처분 당시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수에 대한 처분 등의 대상인 수익증권의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잔여 매입의무는 당해 처분 등의 상대방(본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다만, 양도인을 제외한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 계약상 매입약정금액에 대한 매입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부담하고 양수인이 그 나머지 매입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매입약정금액에 대한 매입의무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투자자로서 참여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별지 4 양식의 '양수확약서'를 투자자들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본항에 따라 별지 4 양식의 '양수확약서'에 대하여 승낙할 권한을 부여한다.

- (3) 이 계약상의 제한이나 절차에 위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양수인은 투자신탁 또는 다른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취득에 따른 권리, 이익 또는 자격의 주장을 할 수 없고,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인은 이 계약에 따른 투자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에 대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및 매입약정기간이 종료되어 수익증권의 처분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19조 제8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의 총수가 49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양수인을 적격투자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 제2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 따라 매입약정기간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어느 일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단독으로, ②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어느 일방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매입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매입의무(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매입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단서, 동항 제2호에 따른 매입의무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및 투자자협의회

제15조 (수익자총회)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법령상 수익자총회 및 그 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투자자협의회의 소집)

- (1) 당사자들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일상적 명령·지시·요청 등 운용지시의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하여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협의회(이하 "투자자협의회")를 설치한다. 투자자협의회는 어느 투자자가 서면으로 그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요구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소집한다.
- (2) 투자자협의회의 소집권자는 이 계약 체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투자자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최초의 투자자협의회의 소집에 한하여 투자자 자격에서의 집합투자업자가 대신하여 소집한다).
- (3) 투자자협의회의 소집통지는 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하되, 개최일로부터 10 영업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i) 매입지분비율 합계 50%를 초과하는 투자자의 찬성(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 및 (ii) 집합투자업자의 동의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의 날을 투자자협의회일로 정할 수 있다.
- (4) 투자자협의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기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의3 (투자자협의회의 결의)

- (1) 투자자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투자자협의회를 소집한 자로 한다.
- (2) 투자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투자자협의회의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령 또는 이 계약에 따라서, 투자자의 이해 상충이나 이 계약의 위반, 귀책사유 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운용 관련 투자자 및 투자자로서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다.

- (3) 투자자협의회의 결의 내용은 투자자들을 구속하며, 투자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i) 자본시장법령, 이 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또는 (ii) 집합투자업자가 이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나 승인을 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 투자자는 투자자 협의회의 결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부합하게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 담한다.
- (4) 이 계약, 신탁계약 및 자본시장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매입 지분비율 합계액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5장 자산의 운용

제16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은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집합투자업자의 독립적 운용)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한다.
- (2) 이 계약은 각 투자자들이 적시에 매입약정금액을 납입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계약에서 규 정한 내용을 준수하고 이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업

무 중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파산·회생절차개시 등 신용악화시 투자제안서 상의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점까지 투자약정(투자신탁이 체결한 대출 약정을 말하며, 이하 본 항에서 동일함)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투자를 즉시 중단하며, 투자약정된 사업의 향후 투자예정액을 제외한 잔여 미인출약정금액 (투자신탁이 체결한 대출약정상 미인출대출약정금을 말함)은 취소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항을 수익자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또한 수익자들은 집합투자업자의 신규 투자 중단에 대해 집합투자업자를 면책하기로 한다. 다만, 기 투자 약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투자대상법인의 파산· 회생절차개 시 등 신용악화 시(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해당 투자대상법 인에 대한 잔여 미인출약정금액을 해당 대출약정 등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담인력)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을 관리 및 운용할 인력(이하 "핵심운용인력". 별지 5. 참조)을 최소 2인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 투자신탁설정시 집합투자업자의 직원으로 근속하고 있는 핵심운용인력은 최소 1인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이 투자신탁 설정시 집합투자업자의 직원으로 근속하고 있는 핵심운용인력의 최소 1인과 기존 핵심운용인력을 대체한 신규 핵심운용인력이 최소 1년 이상 동시에 근속하여 이 투자신탁의 정상적인 운용에 영향이 없을 경우 신규 대체 핵심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 설정시 근속 중이던 핵심운용인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이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동안 핵심운용인력에 대한 여하한 사유(사망, 사고, 질병, 해임, 파견, 사임 등의 사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로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투자자협의회를 소집하여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4) 투자자협의회에서 매입지분비율 합계 50%를 초과하는 수익자(들)(이하 "과반수익자(들)")가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미준수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자협의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존 핵심운용인력을 대체할 잠재적 신규인력에 대한 명단을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인력에 대한 선정을 함에 있어 과반 수익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 만약, 상기 제4항의 절차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 투자신탁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하다고 과반 수익자(들)가 판단할 경우, 수익자들은 대체할 신규 핵심운용인력이 선정될 때까지 신규투자 중단(집한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매입요청을 거절하는 등) 또는 과반 수익자(들)이 지정하는 대체 집합투자업자로 변경을 요청할수 있다.

제18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에 한하여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투자신탁을 운용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계산

제19조 (회계)

투자신탁의 회계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투자신탁의 보수 등)

투자신탁의 보수 등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익분배 등)

투자신탁의 이익분배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22조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은 이 계약에 따라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 투자신탁 존속기간 만료 시에 전부 해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부 해지할 수 있다.

- 1. 투자자 전원이 투자신탁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 2. 금융위원회가 투자신탁의 해지를 명한 경우
-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해지가 요구되는 경우

제8장 그밖에 이계약에 관한 사항

제24조 (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한다.

-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법 또는 그 설립준거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에 따른 영업 또는 행위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있다.
- 2.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계약은 그 제반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를 적법, 유효하게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그 의무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다.

- 3. 각 투자자는 제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될 자격이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자격을 유지한다.
- 4. 각 당사자나 그 관계인은 신탁계약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어떠 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 없다.
- 5. 각 당사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거 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계약 그 밖에 거래행위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그러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 6.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을 결정함에 있어 신탁계약 및 이 계약과 이에 따라 작성된 자료 또는 정보 이외에는 어떠한 자료 나 정보에도 의존한 바 없다.

제25조 (확약)

각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1. 각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의 제반 인허가를 획득하거나 정부에 대한 제반 신고, 등록, 통지 등을 함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 2. 각 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등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전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각 당사자는 이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위원 회를 포함한 정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모든 승인, 동의, 합의 또는 면제를 획 득하고,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

이 계약의 각 당사자가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얻은 일체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목적상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각 당사

자의 수익자, 임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거래관계의 상대방 등에 의하여 정보가 누설 된 경우에 해당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감독상 그 밖에 여하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해당 당사자 자신이 위약행위를 한 경우에 준하여 이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다 만, ①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자료나 정보인 경우 또는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③ 법률 또는 회계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해당 자문사에게 비밀유지의 무를 부과하면서 공개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계약의 발효일 및 종료)

- (1)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시로부터 즉시 유효하며,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
-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즉시 종료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등록 등 대한민 국 정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지 못하거나 그러한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 취소되거나 그러한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 실효되는 것으로 확정된 때
 - 2. 투자신탁의 해지
 - 3. 투자자 전원이 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때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종료시점에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 와 의무는 이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

- (1) 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 당사자("계약위반당사자")는 관계법령의 제한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다.
 - 1. 계약위반당사자는 해당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위반사항이 시 정되고 이와 관련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다른 당사자(이하 "손해

배상청구권자"라 한다)에 대한 이 계약상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에 비용 등(추가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동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신탁으로부터 모든 지급이나 금전의 분배를 받을 권리(분배금, 상환금 그 밖에 수익자로서 투자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금전청구권을 포함하며, 이하 "포기대상채권"이라 한다) 중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 부분을 포기하며, 그와 같이 포기된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귀속한다(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청구권 금액의 비율로 귀속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포기대상채권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 당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포기대상채권 전체의 지급 을 보류할 수 있다.
- (2) 투자신탁의 해지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제1항에 따른 책임은 존속한다.
- (3)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도 계약위반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제13조에 따른 위약벌 등 이 계약상 또는 대한민국 법령상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들을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분쟁해결)

(1)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먼저 상 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소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동 소송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신탁계약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3) 당사자들은 제2항에 규정한 절차와 별도로 어느 때라도 관할권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그 밖에 법적 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 사비용 등 동 법적 절차나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상대 방 당사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

제31조 (그 밖의 조항)

(1)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따른 이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정부의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이라고 투자자 전원이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약정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완전계약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은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당사자들간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협정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3) 양도금지

이 계약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이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하여서만 양도될 수 있다.

(4) 법령의 개폐

이 계약에 인용된 법령의 조항은 동 법령의 개폐가 있은 후에는 그 개정법령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법령을 대체한 법령 중의 해당 조항을 의미한다.

(5) 조항의 가분성

이 계약의 어느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계약서 또는 해당 규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유효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6) 조항의 계속성

어떤 당사자에 대하여 이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권리의 포기

이 계약서의 어느 규정에 관하여 엄격한 또는 적시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러한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이 성립되지도 않는다. 또한 이전에 그 권리의 포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후의 불이행(성격이 유사한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한권리의 포기나 금반언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8) 승계인 및 양수인

이 계약의 모든 규정들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 당사자들의 승계인과 양수인들에 대하여도 유효하고 이들에게 완벽한 구속력을 가진다.

(9) 통지 등

이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요청, 요구, 보고, 동의, 제의나 그 밖에 문서 또는 서류는 이 계약서의 첫 부분에 명시된 주소로 수령권이 있는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거나 팩시밀리로 전송되고 수령확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전달되면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투자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종로1가)

담당자: 최세영 과장

전화번호: 02-721-2433

이메일: se0se0@kyobo.com

팩스번호: 02-721-3871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담당자: 최돈식 차장

전화번호: 02-3771-3409

이메일: dschoi@hanafn.com

팩스번호: 02-3771-3650

집합투자업자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9층 (여의도동, SK증권빌딩)

담당자: 이주행 이사

전화번호: 02-769-7618

이메일: juhaeng.lee@alphasset.com

팩스번호: 02-780-8413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9월 30일

(이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여백)

투자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성명: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 1

직위: 敎保生命保險株式會社

代表理事 社長 尹 列

투자자: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성명: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직위: 사장 이 은 형

집합투자업자: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알파자산운용(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용로 8길 31, 8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성명: 대표이사 최 준 **혁**

직위:

별지1

매입약정금액 및 매입약정비율

(2021년 9월 30일 현재)

투자자	매입약정금액	매입약정비율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531억원	531/831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300억원	300/831
합계	831억원	831/831

별지 2

매입약정인수약정서 (양식)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인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투자하기를 희망하며, 이 약정서에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투자신탁의 투자자들간에 2021년 9월 [*]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및제4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당사가 투자신탁에 대한원
의 매입약정금액을 납입불이행당사자인 로부터 인수하고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숭낙함으로써 당사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당사는,
1. 당사가 납입불이행당사자인로부터 양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총액과
신규로 매입한 수익증권의 총액을 포함한 매입약정금액 금원을,
2. 본 약정서 승낙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기로 하며
3.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투자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_월 _일

본점소재지:

상호 :

대표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l호'의 집합투자업자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
사는 투자계약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	라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_가 납입불이행당사자인로
부터 양수한 수익증권의 총액과 신규로 매입	한 수익증권의 총액을 포함한 매입약정금액
금원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됨을 수락합
니다.	

본점소재지: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9층 (여의도동, SK증권빌딩)

상호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별지 3

매입약정금액 증액약정서 (양식)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인 '알파 국내	IESG 전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 투자신탁 "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투자	·신탁의 투
자자들간에 2021년 [*]월 [*]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 "이라고 [*]	한다) 제11
조 제3항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매입약정금액을 금	원으로 증
액하기로 합니다.	

___년 _월 _일

본점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기	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인	알파자산운	-용 주식회
사는 투자계약 제11조 제3항에따리	'알파 국내ESG	H 전문투자형사모	투자신탁 저	네1호'의 투
자자들을 대리하여	_가 투자계약상	매입약정금액을	금	원
으로 증액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본점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9층 (여의도동, SK증권빌딩)

상호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양수확약서 (양식)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인 '알파 국내ESG 전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 투자신탁 "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투자하기를 희
망하며,년 _월 _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좌를 양수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양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투자신탁의 투자자들
간에 2021년 [*]월 [*]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이하 " 투자계약 "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당사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좌
를로부터 양수하고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당사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당사는,
1. 당사가로부터 양수한 매입약정금액은 금원 (양수한 수
익증권의 총액 포함)으로 하며,
2.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투자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_월 _일
본점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본점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9층 (여의도동: SK증권빌딩)

상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별지5

「운용전담인력」

1. 대표펀드매니저 (겸 핵심운용인력)

가. 성명:이헌

나. 생년월일: 1975.1.11

다. 소속부서 : 인프라본부

라. 직위: 전무

마. 연락처 : 02-769-7610

바. 경력: KDB인프라자산운용, 한국기업평가

2. 핵심운용인력

가. 성명 : 이주행

나. 생년월일: 1980.9.20

다. 소속부서 : 인프라본부

라. 직위:이사

마. 연락처:02-769-7618

바. 경력: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삼성물산 등

별지6

「투자대상법인」

	투자대상법인(차주)	태양광발전소명	비고
1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우송	
2		예리 안동 1 호망호리	
	센트럴태양광발전소26호㈜		
3	센트럴태양광발전소20호㈜	산청하이일호	
4	센트럴태양광발전소21호㈜	산청하이이호	
5	센트럴태양광발전소22호㈜	산청하이오호	
6	센트럴태양광발전소23호㈜	산청하이육호	
7	센트럴태양광발전소4호㈜	㈜현대	
		정선하늘 5호	
8	센트럴태양광발전소24호㈜	금성	
9	센트럴태양광발전소25호㈜	㈜혜성에너지	
10	㈜아침태양광6호	아침태양광6호	
11	센트럴태양광발전소5호㈜	정선하늘 6호	
12	센트럴태양광발전소6호㈜	소나무 1	
13	센트럴태양광발전소19호㈜	소나무 2	
14	㈜다랑쉬태양광	다랑쉬	
15	센트럴태양광발전소1호㈜	황제	
		황제2	
16	센트럴태양광발전소2호㈜	대길	
17		대길2	
17	㈜도화	도화	
18	㈜지보에너지	지보	
19	㈜보문에너지	보문	
20	솔라다이렉트㈜	솔라다이렉트1호	
21	채움쏠라㈜	채움쏠라 1호	
22	피씨솔라㈜	평창회동 1 호	
23	회동에너지㈜	회동에너지 1 호	
24	제이에이치에너지㈜	제이에이치에너지 1호	
	· 9 1 9 1 1 1 9 1 1V17	제이에이치에너지2호	
25	대성쏠라㈜	대성쏠라	

26	더드림에너지㈜	더드림에너지	
27	㈜제이씨엠에너지	제이씨엠에너지	
28	비오엠쏠라㈜	비오엠쏠라	
29	우성에너지㈜	우성에너지	
30	강원발전㈜	강원발전	
31	에스발전㈜	에스발전	
32	케이발전㈜	케이발전	
33	영동발전㈜	영동발전	
34	솔라나인㈜	길탕1호	
35	솔라원㈜	길탕2호	

인 감



서

294493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4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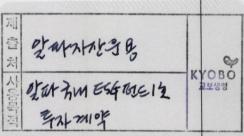


상 호 : 敎保生命保險 株式會社

보 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

대표이사 윤열현

(580415-1644015)



본 인감증명서는 상기 제출처. 사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출처 또는 사용목적 수정시 무효이며 재범급 받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9월 07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200원 영수함.

-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13503101013010700191001520042916010000F101B1J0L1S1 300

발급확인번호 BAVW-QMWF-LBD1

- 1/1 -



Hana21-003238

인 감



명

법인등록번호: 110111-0208169



상 호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대표이사 이은형

(741112-1053118)

제출처 알파자산운용

용 도 투자계약서 체결 제출용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9월 16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5025022190006011910015200722190392T0M1K1D1N0L1S1 20

발급확인번호 DAVW-SOIH-FUL9

- 1/1 -



인 감



명 서

법인등록번호: 110111-2574469



상 호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Alpha Asset Management Co. Ltd

.)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9층(여의도동, 에

스케이증권빌딩)

대표이사 최준혁 (810717-1076011)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9월 29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8037724190009021910015200624140775T2M1K1D1S0L1S1 20

발급확인번호 DAVW-ZPPK-XTV1

- 1/1 -

